

## 붙임

# 체불청산지원 사업자 용자제도

### □ 제도 개요

-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

### □ 지원 요건

구분	지원 요건
사업주 요건	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(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) 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③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* 다만, 휴업·폐업 사업장,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용자 제외
근로자 요건	○ (재직자)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○ (퇴직자)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용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

### □ 용자 조건

구분	용자 조건
용자금액	○ 사업주당 1억 원 한도(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) * 용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
이자율	○ 담보 연 2.2%, 신용 연 3.7%
상환방법	○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* 다만 천재지변,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

### □ 사업추진체계

